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5. 12. 18.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2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2015.12.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코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임기 정비(안 제3조, 제3조의 2)
-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변경(안 제64조, 제65조, 제66조)
- 기증품의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안 제6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수급자 범위를 세분  
(안 제27조, 제36조)
-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조항정비(안 제4조, 제11조, 제21조, 제27조, 제31조, 제36조, 제38조, 제72조, 제73조, 제90조의 2, 제9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기영)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영등포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심의회 위원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민간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명문화, 심의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심의 배제 등 심의회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 하였으며, 특히,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의견을 유도하고,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의한 회의내용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38조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일반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문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영등포구가 2003.12.31.이전부터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되,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 하였으나 그 시기를 2012.12.31.이전으로 변경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5.9)을 반영 한 것이며, 이는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 거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의 다른 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 안 제27조제5항은 재산 대부분요율 산정기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로 세분화하고,
- 안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73조는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지방재정법」 제67조에 따라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며,
- 안 제67조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98 호
----------	--------

제출연월일 : 2015.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구성 및 심의회 위원의 자격, 임기를 규정하는 등 정비(안 제3조, 제3조의 2)
- 나. 지방재정법(2014.11.29 시행)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변경(안 제64조, 제65조, 제66조)
- 다.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운영기준('15.1.) 반영하여 기증품의 취득 시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안 제67조)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수급자 확대를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수급자 범위를 세분(안 제27조, 제36조)
- 마.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안 제4조, 제11조, 제21조, 제27조, 제31조, 제36조, 제38조, 제72조, 제73조, 제90조의 2, 제9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사항

(1)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5.9.24. ~ 10.14.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이 각각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재산관리와 관련된 5급 이상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
2.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⑩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⑪ 위원장은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제1항 본문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하고 “**변경계획**”를 “**변경계획(취소포함)**”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수급자가”를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수급자에게”를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호 중 “2003년”을 “201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2003년”을 “201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2003년”을 “2012년”으로 한다.

제6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제58조”를 “제57조 및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장의 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예측”을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물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를 “물품은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로, “행한다”를 “대하여 행한다”로 한다.

제73조제4항 단서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기관에서”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 후단 중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영등포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u>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의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u></p> <p>③ (생략)</p> <p>④ <u>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⑤ <u>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 ----- ----- <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u> ----- -----.</p> <p>② <u>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이 각각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1. <u>재산관리와 관련된 5급 이상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u></p> <p>2. <u>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③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⑨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⑩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 설>

<신 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제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

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 ~ 4. (생략)

② (생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  
-----  
변경계획(취소포함)-----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제  
27조제4항 및 제5항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7조제6항 -----  
-----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 4. (생략)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 활동 목적으로 구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8. (생략)

9.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

-----  
-----  
-----.

⑤ -----  
----- 제27조제6항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따른 -----  
-----  
-----

④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⑤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부 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 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 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 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으로 한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 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 계규칙」에 따른 보증금의 예를 준 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영등포구 수입으로 한다.

⑤、⑥ (생략)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⑤ -----

-----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2. (생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4. ~ 8. (생략)

③ ④ (생략)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등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300제곱미터 이하 )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3. (생략)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 ㆍ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5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등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

4. ~ 8.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

1. 2012년 -----  
-----  
-----  
-----

2. 3. (현행과 같음)

4. -----  
-----  
-----  
2012년 -----  
-----  
-----



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영등포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영등포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 7. (생략)

8.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64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관리관은 물품을 매입·수리 또는 제조가 필요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65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관리관이 제64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  
-----.  
-----  
-----  
-----  
-----  
-----  
-----  
-----  
-----  
-----  
-----.

5. ~ 7. (현행과 같음)

8. 2012년 -----  
-----  
-----  
-----

제64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  
재무관 -----  
-----  
-----.

제65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  
-----  
----- 제57조  
및 제58조 -----  
-----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4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66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제67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  
-----  
-----.

② 재무관 -----  
-----  
-----.

제66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  
----- 한정한다.

② -----  
분임재무관 -----  
-----.

제67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의 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의(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

<신 설>

제72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 8.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행한다. 다만, 장

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 -----  
----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에 행한다.

④、⑤ (생략)

제73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생략)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  
-- 물품은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 대하여 행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73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감정평가업자 -----  
-----.

⑤ ----- 감정평가업자에게 -----  
-----  
-----  
-----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무관 -----  
-----  
-----  
-----.

⑧ (생략)

제90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생략)

〈신설〉

제94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90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  
-----  
-----  
-----  
-----  
-----  
-----  
감정평가업자에게 -----.